

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!

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도봉구 제3선거구 박석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

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폭력·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,

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,

휴식 시간 보장 및 모성보호 조치,

그리고 인권침해 예방 교육 실시 관련 내용을 조례에 충실히 반영하여

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인권침해로부터

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.

○ 본 의원은 이러한 인권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

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
○ 조례 개정을 계기로

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되고
합숙소에서의 폭력적 통제, 사생활 자유 침해 등
인권침해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